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 및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방재지구 내 건축물의 용적률을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거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등 내에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원활한 교통을 위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방재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안 제85조제5항)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 적용 예외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50조의2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이거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설치하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 견본주택은 지구단위계획 적용을

받지 않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시설에 추가 (안 제2조제2항제2호 사목 신설)

원활한 교통 등을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인 환승센터를 도시·군계획
시설에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환승센터

제50조의2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의2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나.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85조제5항 중 “120퍼센트”를 “14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기반시설) ① (생략)	제2조(기반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정류장	2. -----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신설>	사. 환승센터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 ----- ----- ----- -----.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단	1. ----- ----- ----- ----- ----- -----.
	-----. 다만,

<u>서 신 설></u> <u><신 설></u> 2. 3. (생 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 ④ (생 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 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 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 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 적률의 <u>120퍼센트</u> 이하의 범위 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 는 비율로 할 수 있다. ⑥ ~ ⑫ (생 략)	<u>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는 존치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u> <u>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가설건축물</u> <u>나. 「건축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 하는 가설건축물</u> <u>다. 「건축법 시행령」 제15 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u> 2. 3. (현행과 같음)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u>140퍼센트</u> ----- ----- -----. ⑥ ~ ⑫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9